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6
----------	------

제출일자 : 2023. 12. 6

제출자 : 달성군



## 1. 제안이유

- 신설된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상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의 용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안 제2조), 공공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5조제6호)
  -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 및 면책 기준 구체화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제3호, 제5호)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 취소한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및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안 제15조제1항제7호, 안 제15조제4항)
  - 공공체육시설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 추가(안 제18조제1항)
- 다. 사용료 정리
  -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전용사용료 상한액과 사용료 상한액 추가  
(안 별표 2, 안 별표 3)

- 안 제14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별표 5의 사용료의 감면사항 신설 및 감면대상자 정비

라. 사용자의 책임 강화(안 제17조제1항)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달성군이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을 체육시설 위탁 관리 대상으로 추가 (안 제24조)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1)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 2) 띄어쓰기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10. 27. ~ 11. 16.)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으로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1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주관하는”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내시설	실외시설	
	하·동절기 (연중)	하절기 (4월~9월)	동절기 (10월~3월)
조기	06:00~09:00	05:00~08:00	06:00~09:00
주간	09:00~18:00	08:00~19:00	09:00~18:00
야간	18:00~23:00	19:00~23:00	18:00~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

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5의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를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를 각각 “퍼센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7.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자 및 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달 성 테 크 노 스포 츠 센 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 지 축 구 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 츠 파 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진 천 천 파 크 골 프 장	화원읍 구라리 188-1	-파크골프장
논 공 위 천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위천리 651	-파크골프장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달 성 보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 창 파 크 골 프 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 가 한 정 파 크 골 프 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 지 평 촌 파 크 골 프 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 성 강 변 야 구 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 빈 지 구 체 육 시 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 호 강 변 체 육 시 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 사용	체육관	주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회원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60,000	80,000	
가 체 육 공 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살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		
		야간 (1시간)	50,000	60,000			
다 체 육 공 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딩크 드림필드풋살 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90,000	12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120,000	180,000	
명 체 육 공 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야간	-	-	-	-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야간	-	-	-	-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논 축 구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살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105,000	135,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135,000	165,000	
구 축 구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강 변 야 구 장	마사토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인조잔디		65,000	90,000	150,000	200,000	
달 성 스 포 츠 파 크	주 경 기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 조 경 기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목 적 체 육 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단체강습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월 70,000 (주 2회)		-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20,000 (주 3회)		-		
			월 100,000 (주 2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하 빈 지 구 체 육 시 설	야구장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구장	주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구장	주·야간	-	-	-	-	
	족구장	주·야간	-	-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주 3회	180,000		-	-
		주 2회	120,000		-	-
	실외테니스장	주 3회	130,000		-	-
		주 2회	75,000		-	-
	1일 강습료 (1회 20분)	실내테니스장	20,000		-	-
		실외테니스장	15,000		-	-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li> <li>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li> <li>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li> <li>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li> <li>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li> <li>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li> <li>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헤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li> <li>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li> </ol>					

[별표 3]

##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 1.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100,000			3,200				3,000		2,000		1,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 3개월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이용시간

구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휴관	휴 관
수영장			09:00~18:00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체육 문화 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80,000		60,000		50,000		30,000		70,000		50,000		40,000		20,000	
네버랜드 (회)	관내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4,000			개인사물함(1개월)			대		중				
	관외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8,000						3,000		2,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할인)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	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 이용시간

수 영 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06:00~21:00	06:00~18:00	09:00~18:00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5]

##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전액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전액면제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3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와 같다.</u></p> <p>1“체육시설”이란 <u>국민체육센터,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테니스장, 화원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명곡체육공원,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u>텔레비전 포함</u>),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11. “<u>군인</u>”이란 하사관 이하의 <u>군인</u>을 말하며, 이 경우 <u>전투경찰</u>을 포함한다.</p> <p>12. ~ 13. (생략)</p> <p>14. “<u>체육동호인조직(단체)</u>”이란 <u>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 호와 같다.</u></p> <p>1. “체육시설”이란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u>」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u>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가 <u>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 ----- (<u>텔레비전 포함</u>), ----- -----.</p> <p>3. ~ 10. (현행과 같음)</p> <p>11. “<u>군인</u>”이란 「<u>군인사법</u>」에 따른 하사 이하의 <u>군인</u> 및 「<u>병역법</u>」에 따른 <u>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u>을 말한다.</p> <p>12. ~ 13. (현행과 같음)</p> <p>14. “<u>체육동호인조직</u>”이란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7호에 따라 <u>같</u></p>

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 (생략)

제4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 5. (생략)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생략)

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 5. (현행과 같음)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생략)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 3.(생략)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3.(생략)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생략)

제6조(시설의 개방) ①(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6.(생략)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시간	구분	적용시간
조기	05:00 ~ 09:00	조기	05:00 ~ 09:00
주간	09:00 ~ 19:00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3:00	야간	19:00 ~ 23: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용료)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해당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내시설	실외시설	
	하·동절기 (연중)	하절기 (4월~9월)	동절기 (10월~3월)
조기	06:00~09:00	05:00~08:00	06:00~09:00
주간	09:00~19:00	08:00~19:00	09:00~19:00
야간	19:00~22:00	19:00~23:00	19:00~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용료)

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3.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100분의 30

4. (삭제 2015.9.30)

5. (삭제 2021.6.1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5의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월회  
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妊) 여성 : 100분의 10

7.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  
설·단체 : 전액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전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  
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하  
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  
다.

③ ~ ④(생략)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신

②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  
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  
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  
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  
료를 적용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청을 하였을 경우 : 100%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 까지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 : 미반환

4.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 (제1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5.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100%반환

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 설>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 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4. -----  
-----  
----- : 전액 반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6. -----  
-----  
-----퍼센트-----  
-----,  
-----  
----- 퍼센트-----  
-----

7.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② ~ ③ (생략)

<신 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생략)		
(추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생략)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현행과 같음)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현행과 같음)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생략)						
<추>성크로스센터 <가>달테크노포센터	다목적강당	주간(1시간)				
		야간(1시간)				
(생략)						
비고	1.~6.(생략) 7. 국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생략)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사물함	대	중	소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월)										
	헬스장(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입장요금	사물함(월)						
비고	(생략)										

■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헬스장	06:00 ~ 22:00	06:00 ~ 22:00	휴 관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 매월 1째주, 3째주 일요일은 전관휴관(월2회)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현행과 같음)						
달성테크노스포센터	다목적강당	주간(1시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1시간)	60,000	80,000	60,000	80,000
(현행과 같음)						
비고	1.~6.(현행과 같음) 7. 국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현행과 같음)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사물함	대	중	소	
수영장(월)										
헬스장(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입장요금	사물함(월)						
비고	(현행과 같음)									

■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휴관	휴 관
수영장			09:00~18:00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신설>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이하)	아쿠아 로빅	1회입장요 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체육·문화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80,000	60,000	50,000	30,000	70,000	50,000	40,000	20,000							
네퍼랜드(회)	관내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4,000			개인사물함 (1개월)			대 중					
	관외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8,000						3,000 2,000					
비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할인)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감면	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수영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06:00~21:00	06:00~18:00	09:00~18:00	휴관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신설>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전액 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전액 면제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0%	변경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 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신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신설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50%	신설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50%	신설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30%	신설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10.21.의결)**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①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련규정에 명시(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2.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① 공공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금지(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2020.6.8.의결)**

1.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 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일방 귀책 이외의 여러 불가항력 사항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2.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 ①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 (체육시설) 또는 ‘5근무일 이내’ (기타시설)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관련 규정에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6.9.30)

1.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공원·유원지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개정 2019.12.3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신설 2019.12.30.)

